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3.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11월 13일, 이철규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4.24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(2026.3.17.)

상정, 심사, 의결(수정)

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(2026.3.17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수정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이철규의원)

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」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,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

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.

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검토보고 참조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정태호)

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의결 내용에 맞추어 법률 제명 및 시행일을 수정하고 유효기간을 규정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

- [붙임] 1.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 .

제안자 : 재정경제기획위원장

수정이유

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의결에 맞추어 법률 제명 및 시행일을 수정하고 유효기간을 규정함.

수정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의 근거법률 제명을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변경함(안 별표 1 제24호).

나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일을 수정하고, 동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유효기간을 신설함(안 부칙).

부대의견

기획예산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현재 반도체산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기타 회계·기금의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·기금을 정비한다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1 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, 제25호(종전의 제24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5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5호를 제26호로 한다.

부칙 제1조 단서 중 “제25호”를 “제26호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법률 제21419호	개정안	수정안
		부칙 <u>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	부칙 <u>제1조(시행일)</u> <u>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유효기간)</u> <u>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
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<u>제25호</u> 의 개정규정은 202		부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 <u>제26호</u> -----

	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 다.		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별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26.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

부칙 제1조 단서 중 “제25호”를 “제26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
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	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. 다만, 별표 1 <u>제25호</u> 의 개 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----. ----- <u>제26호</u> ---- ----- -----.